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590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나5905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1가단2692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김영훈

피고, 항소심당사자 1. B

2. C

3. D

피고, 항소인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천정환, 손환필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7. 2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1가단26921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7,181,445원, 피고 D은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원고에게 39,10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11. 서울 영등포구 F 대 1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대 18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1973. 5.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20. 9. 24.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9. 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6. 2.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21. 5. 1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 C은 2016. 5. 20.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1994. 4. 2.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6. 7.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피고 B, C, D 소유 토지들로부터 공로(J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6. 5. 20.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2020. 9. 24.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이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의 지분 3/7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각 7,181,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제2토지에 인접한 I 토지 위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5.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2021. 5. 14.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이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원고의 지분 3/7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2,580,5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일부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도록 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5. 9. 25.(원고의 소유권상실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2020. 9. 24.(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임료 38,554,64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16. 5. 15.(원고의 소유권상실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2021. 5. 14.(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임료 52,688,000원 합계 91,242,640원(= 38,554,640원 + 52,688,000원) 중 원고의 지분 3/7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9,103,988원(= 91,242,640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74. 4.경 서울 관악구 K 대 1077평으로부터 분할되었는데, 그 무렵 이미 사실상 도로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통행에 이용되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늦어도 1994. 2. 7.(피고 B, C 소유 건물의 건축허가일) 이전에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부터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자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토지는 택지를 조성분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택지의 효용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로 제공하여 택지의 매수인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특히, 원고는 1992년경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1240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또한,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을 제9호증(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등1)은 1992년경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41240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1980년경 내지 1984년경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전 소송 당시까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게 12,939,189원 및 199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96,4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실, ③ 이 사건 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1993. 8. 12.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의 주변토지를 택지로 매각처분할 때에 그 택지의 매수인 기타 그 주택지대 내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지대에 인접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무상으로通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가 사실상 도로화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通行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초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이어서 그들의通行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다거나 사실상 점유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의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주변토지를 택지로 매각처분할 때에 그 택지의 매수인 기타 그 주택지대 내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지대에 인접한 이 사건 제1, 2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가 사실상 도로화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초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이어서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나아가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 사건 전 소송의 확정된 판결의 판단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자는 그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 B, C, D이 이를 통행로로 이용해왔다고 하여 이들을 점유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 C, D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점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훈, 판사 이종채, 판사 허일승

별지

1) 원고, N, O, P, Q, R, S, T이다.